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1. 3 선고 2020가단741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병주

피 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주완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대석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1. 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D은, 원고 A에게 50,181,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9. 8.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피고 D에게 이 법원 2019. 8. 16. 접수 제320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는 원고 B의 아들이고, 피고 C는 피고 D의 딸이다.

원고 A와 피고 C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생활하다가, 피고 C는 2020. 2. 13. 원고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이 법원 2020드단10607). 이혼소송에서 2020. 10. 15.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피고 D은 2008. 8. 11.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2015. 4. 27.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별지 목록 2, 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2019. 8. 16.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19. 8.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금전 지급 청구)

1) 원고 A

○ 대여금 주장

원고 A는 피고 D을 대신하여 2015. 3. 12.부터 2015. 5. 4.까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입하거나 인건비를 지출하였는데, 그 금액은 52,191,130원이다.

원고 A와 피고 C는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임차하여 함께 살았는데, 전세보증금 중 5,000만 원은 E은행으로부터 대출하여 마련하였다.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원고 A와 피고 C는 위 건물에서 거주하기로 하고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아 그중 5,000만 원을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원고 A는 2015. 4. 11. 피고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2015. 4. 13. E은행에 대출원리금 50,111,799원을 변제하고, 2015. 4. 17.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아 피고 D에게 4,799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원고 A가 피고 D을 대신하여 지급한 공사비 52,191,300원에서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 201만 원(=5,000만 원-4,799만 원)을 뺀 50,181,3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금 주장

피고 D은 원고 A의 돈으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등을 지급하여 이득을 보았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 B

원고 B은 2015. 4. 13. 피고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사해행위취소 청구)

피고 D은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금전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였다. 피고 D의 위와 같은 재산처분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처분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갑 3호증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비를 빌렸다거나 원고 A에게 원고 A가 지출한 공사비를 갚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 5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원고 A는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와 피고 D으로부터 빌린 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을 지으면서 필요한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2015. 4.경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이 사건 건물로 이사하여 피고 C 및 자녀와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피고 D은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위 원고로부터 공사비를 빌려서까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야 할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2015. 4. 이후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 D에게 그 주장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D은 2019. 8. 16.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피고들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가 원고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비로소 원고 A가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는 가족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신이 공사비를 부담하여 피고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생활한 것으로 보는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 A가 피고 D에게 건축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대여하였다거나 피고 D이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갑 4호증에 의하면 원고 B이 2015. 4. 13.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B이 피고 D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B과 피고 D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 B이 위 돈을 피고 D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3호증, 을 1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 B이 2015. 4. 13. 피고 D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과 같은 금액의 돈이, 같은 날 피고 D의 위 계좌에서 원고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 B이 피고 D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피고 D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 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살핀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나머지 성립 요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재현

부동산 목록

1. 순천시 F 대 556㎡
2. 순천시 F에 있는 G동호(H)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69.83㎡
3. 순천시 F에 있는 I동호(H)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84.71㎡. 끝.

